선박 발생 오염물질 처리

※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

20톤 미만 어선 :::

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육상처리

- 페트병,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하여 처리
-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

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선상집하장으로

- 그물에 걸려 올라온 쓰레기, 폐어구 등은 선상집하장에 처리

일반선박 :::

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배출

- 플라스틱 등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은 유창청소업체에 인계
- 음식물찌꺼기, 화물잔류물 등은 배출가능해역에서 처리

조선소 수리·해체 중 발생한 오염물질 처리 :::

기존	개정('20.9.25. 시행)
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유창청소업자만 처리 가능	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및 유창청소업자,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

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기준

※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제2항

구분	2010.1.1. 이전 인도된 선박	2010.1.1. 이후 인도된 선박
600톤 미만 소형유조선	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*을 충족 시 운항 가능하나,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**30년 초과 할 수 없음**	이중선저 구조로 건조
150톤 미만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	선박인도시기 / 운항금지 시기 '69.12.31. 이전 인도 / '20.1.1. '70.1.1.~'79.12.31. 인도 / '21.1.1. '80.1.1. 이후 인도 선박 / '22.1.1.	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운항가능

*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(해수부고시 제2019-177호)제2조 제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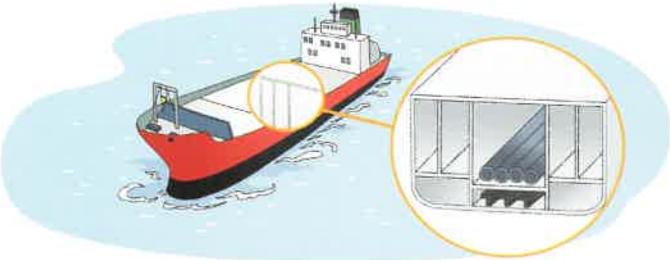

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

※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/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10조

황함유량 기준 초과연료 사용금지

- 해역과 유종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강화

해역 \ 유종	경유	중유	
일반	0.5%	0.5%	(국제항해 '20.1.1.~)
영해·배타적경제수역만 항해	0.05%		(국내항해 '21.1.1.~)
배출규제해역 (부산, 인천, 울산, 여수·광양, 평택·당진)	0.1% ('20.9.1.~ 정박선박 적용/ '22.1.1.~ 모든선박적용)		

*저속운항해역 : 12노트 이하 운항

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조치사항

1 기관일지 기재 사항 / 1년간 보관

-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선박

배출규제해역 진입 전	운전모드(0.5%→0.1%) 변경시간 및 위치
Scheme A의 경우	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파라미터 체크결과(이상유무)
Scheme B의 경우	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황산화물 배출량 (4.3 SO2(ppm)/CO2(%, V/V) 이하 여부) 등

-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

연료유	종류, 교환 완료 날짜(시간, 장소), 탱크 잔량, 최근 수급 연료유 공급서 황함유량

2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·사용하는 경우 : **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 비치**

선박 ·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

※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, 제36조

기존	개정('20.9.25. 시행)
임명·채용된 후 교육이수	교육·훈련 이수 후 임명 - 선박·해양시설 :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- 해양환경관리업 :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과정